위임계약서

본 계약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업무에 관하여 <u>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번지</u>에 주소를 둔 <u>(주)아이피에스(이하 "갑"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3-1번지</u>에 주소를 둔 <u>해강특</u> <u>허법률사무소(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2005년</u> 11월 일자로 체결되었다.

- 다

음 -

제 1 조 (위임업무)

본 계약에 의해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국내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제반업무
- 2. 해외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제반업무
- 3. 각종 심판, 소송에 관련된 업무
- 4. 각 권리의 등록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
- 5. 저작권 및 프로그램등록과 관련된 업무
- 6. 기타 "갑"이 의뢰한 지적재산권관련 제반업무

제 2 조 (을의 의무)

- 1. "을"은 "갑"이 위임한 제 1 조의 업무에 대하여 그 중요성 및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출원에서 권리만료까지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특히, 특허, 실용신안출원의 경우 을은 정식 출원의뢰서와 완결된 직무발명신고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명세서 초안을 갑에게 송부하며 상표조사의 경우 위임일로부터 3일이내에 그 결과를 송부하기로 한다. 다만, 명세서 초안 작성이나 상표 조사를 위하여추가보완 또는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갑"의 사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제 3 자에게 재위임하거나 그 위임을 거절할 수 없다.
- 3. "을"은 본 계약기간 또는 그 이후에도 "갑"의 업무수행 중 지득한 "갑"의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을" 또는 "을"의 종업원이 비밀을 누설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



10年

4. "을"은 "갑"이 위임한 업무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직원의 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 여야 하며, "갑"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제 3 조 (위임 비용)

- "갑"은 제 1 조에 명시된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위임비용 (부가가치세 및 관납료 별도)을 지급한다.
- 2. 국내 비용
- 1) 출원/심사 및 등록관련 비용

구분		출원/심사시(착수금)		
		특허	실용	비고
	기 본 료	800,000원	600,000원	독립항 1항 및 명세서 (도면 포함) 20면 기준
	독립항 추가	70,000원		
	종속항 추가	30,000원		
	명세서(도면 포함) 20면 초과 1면당	10,000원		
	기술평가청구료	100,000원		
==)	병합출원 I ^{注1)}	기본료	기본료	
특허 / 실용	(우선권주장) (출원+출원, 출원+직발)	※병합 추가료는 지급하지 않음		
실용 신안	병합출원Ⅱ (직발+직발)	초안 접수전: 착수금외 병합추가료 없음 초안 접수후: 착수금 + 기본료의 1/2		
	분할출원	기본료의 1/2		
	이중출원	특허→실용: 200,000원 실용→특허: 400,000원		
	출원포기 (위임후)	초안 접수전: 비용지급 없음 초안 접수후: 기본료의 1/2 대리인 공헌: 기본료		
	권리유지,기간연장	20,000원/건		
등록보수금(특허)		출원시 대리인수수료의 70%		단, 실용은 기평청구에 따른 '유지결정'시 지급
디자인	기 본 료	300,000원		
상표	기 본 료	200,000원		
	다류 출원	50,000원/1류 추가		
	갱신(변경)	100,000원		
	상표 조사	50,000원		
등록보수금(디자인 · 상표)		출원시 대리인수수료의 100%		
선	행기술조사 ^{註2)}	1,000,000원		
국	내우선권 주장	50,000원/1주장		
우선심사신청		200,000원		· - - - - - - - - - - - - - - - - - - -

註1)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공개일정 등을 이유로 직무발명신고서를 명세서로 하여 출원하고, 추후 우선권 주장 출원하는 경우에 기본료의 1/2을 선출원에 대한 대리인수수료로 정함. 註2) 선행기술조사의 범위는 한국/일본/미국의 특허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다만 한국의 특허자료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간이선행기술조사의 경우에는 300,000원을 적용함.





2) 결정계 심판 관련 비용

구분			수수료	성사금 ^{註3)}	
	특허/실용	기 본 료	600,000원		
1 심		독립항 추가	80,000원	600,000원	
1 ^심 (특허심판원)		종속항 추가	30,000원		
	의장/상표	기 본 료	400,000원	400,000원	
	구두 심리(1회당)		400,000원		
2 심	착 수 금		2,000,000원	2,000,000원	
(특허법원)	준비 절차/변론(1회당)		400,000원		
3 심	대법원 상고		2,000,000원	2,000,000원	
(대법원)	준비절차/변론(1회당)		400,000원		

註3) 결정계 심판에서 승소시에는 심판/소송의 성사금을 지급하고 등록 성사금은 지급하지 않음.

3) 이의신청 및 당사자계 심판 관련 비용

구 분			착수금 ^{註4)}	성사금
이의 신청	특허/실용	기본료	1,500,000~2,500,000원	좌동
선생 (답변)	상표	기본료	1,000,000원	좌동
심 판	1 심	착 수 금	3,000,000~5,000,000원	좌동
	(특허심판원)	구두심리(1회당)	400,000원	-
	2 심 (특허법원)	착 수 금	3,000,000~6,000,000원	좌동
		준비 절차/변론(1회당)	400,000원	-
	3 심 (대법원)	착 수 금	3,000,000~5,000,000원	좌동
		준비 절차/변론(1회당)	400,000원	-

註4) 이의신청, 심판, 소송 등 분쟁사건(당사자계)의 경우 위 비용 기준을 참조하여 사안의 난이도, 청구항 수 등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





3. 해외 비용

1) 출원/심사 및 등록 관련 비용

구 분			착수금	성사금	
특허/실용 ^{註5)}	실용 ^{誰5)} 기본료(1개국당)		900,000원	630,000원	
병합출원	기 본 료		국당 착수금	C20, 000 cl	
(특/실)	(특/실) 추가료(추가 1건당)		400,000원	630,000원	
	의 장(1개국	당)	400,000원	500,000원 ^{註6)}	
	상 표(1개국	당)	300,000원	300,000원 ^{註7)}	
CA, RCE	, 변경/분할출	·원, 임시출원	400,000원	630,000원	
	REEXAM		450,000원	630,000원	
	REISSUE		450,000원	630,000원	
PCT 출원	국제출원 (기본료)		900,000원	_	
101 20	국내단계 (지	정국당 기본료)	900,000원	630,000원	
EPO 출원	フ	본 료	900,000원	630,000원	
중간사건(의	중간사건(의견서/보정서 등) 처리비용			(OA 1회당)	
IDS	제출 기본료	(1회당)	50,000원	번역료는 별도 적용	
	한 → 영	(국문 1면당)	30,000원		
	한 → 일	(국문 1면당)	20,000원		
번역료	한 → 기타어 (국문 1면		30,000원		
민직표	영 → 한 (국문 1면당)		20,000원	_	
	일 → 한 (국문 1면당)		15,000원		
	기타어 → 형	한 (국문 1면당)	30,000원		
도면 작성료	1면당		20,000원	-	
	대리인 공헌시		600,000원		
출원 포기	당사	,번역전	비용지급 없음	-	
	요구시	번역후(언어당)	번역료/도면 작성료		
해 9	외 상표 조사	비용	100,000원	-	
	<u></u> 리 유지비용		30,000원	-	
해외출원 -	유지비용 (유 [.] 1회당)	럽 일부 국가	30,000원	-	
註5) 채외추위		시시 겨고르 이저	무시시 드로이 가느하	구가(호코 시기포 드)이	

註5) 해외출원시 타 국가의 심사 결과를 인정, 무심사 등록이 가능한 국가(홍콩, 싱가폴 등)에 대해서는 국가수에는 포함시키되 해당 국가 위임비용은 300,000원만 지급하고 등록성사금은 지급하지 않음.

註6) 註7) 무심사 등록(의장/상표) 및 갱신출원(상표)의 경우 성공사례금은 지급하지 않음.

4. 기타 비용

구	분	기본료(착수금)	비고	
			타임차지 적용,	
변리사 자문(특	F허분석, 감정 등)	100,000원/1시간	통상 감정사건의 경우	
			300~400만원 소요됨	
FILE WRAI	PPER 신청비용	30,000원	1건 기준	
명의이전 비용	국내	100,000원	1건 기준	
	해외	100,000원	1건 기준	
출원인	국내	50,000원	1건 기준	
정보변경 비용	해외	100,000원	1건 기준	
중간수임	OA 상태 위임시	_	성사금: 기본수수료	
	OA 없이 위임시	_	성사금: 기본수수료	
저작권 • 프	로그램 등록	200,000원		
정보제공	단순한 문서제출	100,000원	선행기술조사 수행없음	
정보세증	정보제공의견작성	300,000원		
7.	병고	300,000원	권리분석시 감정비용 추가	
중도위임(전/후	· 대리인에 대해)	착수금은 없으나 등록시 실질 기여		
- 1, 5, 6, 1	. , , , , , , , , , , , , , , , , , , ,	대리인에 성사금(기본료) 지급		
위임자에 의한	포기, 취하, 화해	포기, 취하시에는 비용지급 없으나 승소에 준한		
		여건에서 화해시 성사금(기본료) 지급		

- 註) 부가가치세 및 관납료는 별도임.
- 5. "갑"이 "을"에게 위임한 사건에 대한 관납요금은 "갑"이 실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6. "갑"이 "을"에게 위임한 해외 특허출원, 등록 및 분쟁사건에 대하여 외국 현지 대리인 과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을"의 통신 및 우편요금 등은 "갑"이 실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7. 상기 제 2 항 및 제 3 항의 비용 중 "을"의 명백한 실수나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 및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8. 기타 제 1 조에 따른 위임비용은 본 조 제 2 항 및 제 3 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원에서 등록까지 과정의 업무 이외의 이의신청, 심판, 소송 등의 업무와 본 계약서의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경우에는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 4 조 (비용지불 방법)

1. "을"은 위임업무의 처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 경우, 제 3 조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갑"에게 위임비용을 청구하고, "갑"은 청구된 비용내역을 검토 및 확인 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인정되면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2. "을"은 "갑"의 위임업무와 관련하여 제 3 자로부터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용청구서가 "을"의 사무소에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비용청구서의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을"이 감수해야 하다.

제 5 조 (계약의 발효 및 소멸)

- 1.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효되고, 본 조 제 2 항에 의거 소멸되지 않는 한 유효하고, "갑"과 "을" 양 당사자는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본 계약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을"은 1년 단위로 본 계약 내용의 수정·변경·보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2.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중 어느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60일전 그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나, 그 해지 원인이 일방의 사정이나 귀책사유(사유 발생자)에 의한 경우에는 계류 중인 위임업무에 대해 쌍방간의 합의를 통한 완전한 문제해결에 적극협력하며, 계약 해지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유 발생자가 부담한다.

제 6 조 (통지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기타사항)

본 계약의 해석상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있을 시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규정과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표자에 의하여 본 계약서 서두의 날짜에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번지

주식회사 아이피에스 대표이사 장 호 승



"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3-1 대림빌딩 7층 해강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박 보 경 (인)